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: 수문관측설비 무선중계시설 개선 사업

나. 예 산 액: 금613,230,000원(부가세 포함)

다. 사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120일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법적근거: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5조제4항제3호

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
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긴급한 행사 또는 **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**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나. 긴급입찰 사유

본 사업의 목적은 한강홍수통제소 관할 주요 하천 및 지점의 수위 및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여 홍수 예·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문관측설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홍수예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해당 설비 개선을 통해 극한호우,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입찰을 요청합니다.

한강홍수통제소장 인